

1996. 5.

光州廣域市西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

社 會 都 市 委 員 會

光州廣域市西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

1996年 5月
社會都市委員會

1. 審査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6年 4月29日 光州廣域市 西區廳長 提出
및 提出者
- 나. 回附日字 : 1996年 4月 29日
- 다. 上程日字 : 第55回 西區議會(臨時會) 會期中
第1次 社會都市委員會(1996年 5月 7日 上程議決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建設課長 金 寅 奎)

가. 提案 事由

-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직제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국 도시개발과가 폐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- 동 조례 제7조 제2항중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도시개발과장을 삭제하고 건설과장으로 변경하였음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吳 龍 洙)

-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종전에 도시국 도시개발과 분장업무중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제7조 제2항(간사 및 서기) 간사는 "도시개발과장"을 "건설과장"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
5. 討論 要旨 : 생 략

6. 審査 結果 : 원안 가결

7. 少數 意見 要旨 : 없 음

8. 其他 事項 : 없 음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2항 중 “도시개발과장”을 “건설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 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와 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</p> <p>② 간사는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개발계장으로 한다.</p>	<p>제7조 (간사 및 서기) ① 현행과 같음.</p> <p>② ----- 건설과장----- -----</p>